

의안번호	제 호
의 결 연 월 일	년 월 일 (제 회)

학교급식 표준단가 마련 및 의무교육 대상자
급식비 국비지원 건의안

제 안 자	정책복지위원장
제안연월일	년 월 일

학교급식 표준단가 마련 및 의무교육 대상자 급식비 국비지원 건의안

의안 번호	
----------	--

제안연월일 : 2021년 12월 6일
제안자 : 정책복지위원장

□ 주 문

- 헌법 제31조제3항에서 정하는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는 헌법적 이념 및 가치를 확인하고 실현하며 차별 없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2011년부터 충청북도에서는 전국 최초로 초·중학생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하였고, 현재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지방비 부담으로 초·중고 학생 등을 대상으로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음.
- 헌법정신에 따라 최소한 「초·중등교육법」 제12조에 따른 의무교육을 받는 자에 대해서는 전액 국비 부담이 당연한 조치일 것이나 전액 지방비 부담으로 시행하고 있어 지방재정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무상급식 대상 범위 및 평균 단가의 차이에 따른 지역 불평등 초래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바,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전국 공통의 급식 표준단가 마련 및 의무교육 대상자의 무상급식비 국비 지원을 요청하는 건의안을 채택하려는 것임.

□ 제안이유

- 2011년 충북에서 전국 최초로 초·중학생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한 이후, 10여 년이 경과된 현재는 전국 17개 시도 모두 전액 지방비로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음.

○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는 헌법정신에 따라 완전한 의무교육 실현을 위해서 무상의 범위에 급식도 포함해 국비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나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지방재정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무상급식 대상 범위 및 급식 평균 단가의 차이에 따른 지역 불평등 초래 등 많은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음.

○ 이에, 충청북도의회는 지역 사정에 따른 차별적 급식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평등한 급식이 시행될 수 있도록, 헌법 정신에 따라 무상급식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학교급식의 대상범위 및 급식 표준단가의 명확한 규정과 「초·중등교육법」 제12조에 따른 의무교육을 받는 자에 대한 무상급식 비용 전액의 국비 지원에 관한 사항이 규정될 수 있도록 「학교급식법」의 조속한 개정을 건의함.

건의안 이송처

○ 청와대, 국회, 기획재정부, 교육부

첨부

○ 학교급식 표준단가 마련 및 의무교육 대상자 급식비 국비지원 건의안

학교급식 표준단가 마련 및 의무교육 대상자 급식비 국비지원 건의안

과거에는 학교 무상급식이 선별 또는 보편 복지의 담론에 의해 찬반 논쟁의 대상이 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 시점은, 학교라는 공간에서 차별금지 등 인권적 가치 학습과 ‘우리’ 라는 공동체성 형성을 위한 교육과정으로 보아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었고, 교육 전문가들도 학교급식은 우리 아이들의 성장기에 건강한 심신 발달을 도모하고 올바른 식습관 제공을 통해 평생건강의 기틀을 마련해주는 중요한 교육의 일환임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2011년 충청북도는, 당시 무상급식이 일부 저소득층 학생만을 대상으로 실시돼 가난에 대한 낙인효과 문제가 지적되던 상황에서 헌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는 헌법의 이념 및 가치를 실현하고 학부모 재정부담 경감과 차별 없는 공정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전국 최초로 초·중학생 전면 무상급식을 추진하였고, 10여 년이 흐른 현재는 전국 17개 시도 모두 지방비를 부담해 초·중·고 학생 등을 대상으로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무상급식은 교육의 일환으로서, 헌법 정신에 따라 최소한 「초·중등교육법」 제12조에 따른 의무교육을 받는 자에 대해서는 전액 국비 부담이 당연한 조치일 것입니다. 그러나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선해 전액 지방비로 무상급식을 추진한 지 10여 년이 경과된 지금까지도, 예산부담에 대한 책임을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고 있습니다.

충북(2012. 6. 22)을 비롯한 지방자치단체 및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무상급식의 국비 지원을 건의했었고, 제19, 20대 국회에서 김춘진 의원(2012)을 비롯한 다수의 의원들이 「학교급식법」 일부개정을 통해 무상급식 관련 국가 책임 및 국비부담 원칙 규정을 시도했지만, 안타깝게도 상정된 개정안은 모두 임기 만료 폐기 되었습니다.

따라서 현행 「학교급식법」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급식 단가 기준도, 국비부담 규정도 없고, 식품비 전체와 급식운영비 일부를 보호자 부담으로 규정하고 있는 등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무상급식이 운영되고 있어 다음의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첫째, 지역별로 무상급식 대상의 범위¹⁾와 급식 평균 단가²⁾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무상급식의 지역별 불평등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둘째, 무상급식 비용 전액을 지방비로 부담하고 있어 지방재정 악화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셋째, 2015년 경남의 사례처럼 자치단체장 의지에 따라 갑작스런 무상급식 중단 사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피해는 해당 지역의 학생 및 학부모들이 고스란히 받게 되므로, 이런 상황이 재차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에 충청북도의회 의원 일동은,

지역 사정에 따른 차별적 급식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평등한 급식이 시행될 수 있도록 헌법 정신에 따라 무상급식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학교급식의 대상범위 및 급식 표준단가의 명확한 규정과 「초·중등교육법」 제12조에 따른 의무교육을 받는 자에 대한 무상급식 비용 전액의 국비 지원에 관한 사항이 법에 명시될 수 있도록 「학교급식법」의 조속한 개정을 강력히 요청 드립니다.

년 월 일

충청북도의회

1) 2021년 기준 무상급식 대상 범위: 유, 초·중·고·특수(인천, 대전, 광주, 울산, 충남, 제주), 초·중·고·특수(서울, 대구, 세종, 충북,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초·중·고(부산, 경기, 강원)

2) 2021년 기준 무상급식 식품비 평균단가: 서울(3,486원), 인천(3,133원), 강원(2,530원), 충북(2,506원), 경북(2,440원)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비 고
<p><신 설></p>	<p>제7조의2(급식표준단가) ① 교 육부장관은 학생에게 균형 잡힌 영양식단이 제공될 수 있도록 매년 <u>급식표준단가</u> <u>를 정하고</u>, 이를 근거로 학 교급식이 이루어지도록 하 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급식표준 단가의 책정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p>	<p>○ 급식표준단가 결정조항 신설</p>
<p>제8조(경비부담 등) ① 학교급식 의 실시 <u>에</u> 필요한 급식시설· 설비비는 당해 학교의 설립· 경영자가 부담하되, 국가 또 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다.</p>	<p>제8조(경비부담 등) ① ----- ----- <u>설비비와 급식운영비는</u>----- ----- -----.</p>	<p>○ 학교의 설립·경 영자 부담 항목에 급식운영비 포함.</p>
<p>② <u>급식운영비는 당해 학교의 설립·경영자가 부담하는 것 을 원칙으로 하되, 대통령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자 (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법률 에 따라 학생을 부양할 의무 가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그 경비의 일부를 부 담할 수 있다.</u></p>	<p><삭 제></p>	<p>○ 급식운영비의 보호자 부담 조항 삭제</p>
<p><신 설 ></p>	<p>제9조의2(의무교육대상자에 대한 경비 지원) 제8조 및 제9조에도 불구하고 「초· 중등교육법」 제12조³⁾에 따른 의무교육대상자의 급 식에 관한 경비는 국가가 전액 지원한다.</p>	<p>○ 의무교육대상자의 급식 경비 전액 국비 부담 조항 신설</p>

참고2

2021년 전국 시·도 무상급식 단가 현황

시·도	지원대상	급식비 단가 구성	급식단가(원)	식품비단가(원)	비고('20년 대비)
서울	초·중·고·특수	- 식품비, 운영비 - 인건비 * 공립사립초 인건비(80,976백만원) 교육청 100% 별도 지원	공립초: 3,768 국·사립초: 4,898 중·각종중: 5,688 고·각종고: 5,865 특수: 5,472	공립초: 3,179 국·사립초: 3,179 중·각종중: 3,412 고·각종고: 3,589 특수: 3,753	초 444원, 중·고 194원 인상
부산	초·중·고	- 식품비, 운영비, 인건비 일부	초 3,160 중 4,030 고 4,200 [평균 3,648]		특수학교(교육청100%) 초 60원 중·고 80원 인상
대구	초·중·고·특수	- 식품비, 운영비, 인건비 교육청 별도 지원	초 2,800 중 4,120 고·특 4,130 [평균 3,489]		급식단가 5~7% 인상 초 130원 중·고 200원
인천	유·초·중·고·특수	- (유) 급간식비, 운영비 - (초·중·고) 식품비, 사제보조원 인건비, 운영비	공립유 2,520 사립유: 3,250 초 2,770 중 3,400 고 3,460 특수 4,11	공립유 2,120 사립유: 2,400 초 2,360 중 2,920 고 2,920 특수 3,500 [평균 3,133]	'20년 대비 식품비 초 △530원, 인하 중 30원 고 213원 인상
광주	유·초·중·고·특수	- 식품비(70%)		유: 2,300 초 2,027 중 2,517 고 2,420 특수 2,811	식품비 단가 2% 인상 Non-GMO 100원 지원 친환경 300원 지원
대전	초·중·고·인가대안·방통중고	- 식품비 70% 이상 - 운영비, 인건비 50%	공립유 1,500 사립유 2,500 초 3,300 중 4,000 고 4,400 [평균 3,746]		급식단가 5~15% 인상 초 150원 중 300원 고 500원 * 유·특수학교 교육청 100%
울산	초·중·고·특수·방통중고 * 유치원: 교육청 95.7%, 남구, 울주군 4.3%	- 식품비, 운영비, 인건비 50% 정도	초 2,850 중 3,550 고 4,050 특 3,880		급식단가 2% 인상 초·중·고 50원 고 500원 * 특수학교 교육청 60% 사립 40%

3) 「초·중등교육법」

제12조(의무교육) ① 국가는 「교육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시설을 확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 구역의 의무교육대상자를 모두 취학시키는 데에 필요한 초등학교, 중학교 및 초등학교·중학교의 과정을 교육하는 특수학교를 설립·경영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초등학교·중학교 및 특수학교에 그 관할 구역의 의무교육대상자를 모두 취학시키기 곤란하면 인접한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합동으로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특수학교를 설립·경영하거나, 인접한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특수학교나 국립 또는 사립의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특수학교에 일부 의무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④ 국립·공립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제3항에 따라 의무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위탁받은 사립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의무교육을 받는 사람으로부터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비용을 받을 수 없다.

시.도	지원대상	급식비 단가 구성	급식단가(원)	식품비단가(원)	비고('20년 대비)
			방통중고 8,000 [평균 3,323]		
세종	초·중·고·특수	- 식품비 지원(시) - 운영비, 인건비(교육청) - 시, 교육청 총예산의 5:5 분담		초 2,550 중 2,970 고·특수 3,040	단가 변동없음 * 전체 무상급식비의 50% 내에서 식품비 지원
경기	초·중·고	- 식품비 - 운영비 인건비: 교육청 100%	초 3,461 중 4,652 고 5,449 [평균 3,989]		공립유: 교육청 전액 사립유: 교육청 50 사군 50 특수 대안학교 교육청 전액
강원	초·중·고(일반)	- 식품비		초 2,293 중 2,753 고 2,852 [평균 2,530]	평균 5% 인상 초 113원, 중 126원 고 138원
충북	초·중·고·특수	- 식품비(인건비·운영비 제외)		초 2,172 중 2,632 고 2,967 특 3,630 [평균 2,506]	초 20원, 중 30원 고 36원, 특 40원 인상
충남	유·초·중·고·특수	- 식품비		유 1,740 초 2,334 중 3,067 고 3,547 특 3,471 [평균 2,797]	초등 3% 고등 2% 인상
전북	초·중·고·특수	- 식품비, 운영비, 인건비	초 2,800 중 3,500 고 3,500 [평균 3,160]		* 단가 변동없음 소규모학교추가지원 - 50명이하 400원 - 100명이하 300원
전남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특수)학교 : (읍면) 교육청 (동) 식품 기초 / 인건 운영 교육청	- 식품비		초 2,028 중 2,378 고 2,528	단가 변동없음
경북	초·중·고·특수	- 식품비		초 2,170 중 2,590 고·특수 2,660 [평균 2,440]	단가 변동없음
경남	초·중·고·특수	- 식품비		초 2,532 중 3,100 고 3,369 특수 3,541 [평균 2,836]	단가 변동없음 * 특유초 : 3,130원 * 특중고 : 3,740원
제주	유·초·중·고	- 식품비, 운영비	유·초 2,470 중 2,720 고 3,020 [평균 2,688]		단가 변동없음

※ 충북 식품비 단가(2022년 당초): 초 2,261원, 중 2,742원, 고 3,090원, 특수 3,770원